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Taiwan Non Tariff Barriers Issue

대만, 수입 식품 검사 정보 신고 지침 개정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 수입 식품 검사 정보 신고 지침 개정 발표

2024년 6월 26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1항에 의거하여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검사 정보 신고 지침(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資訊欄位申報須知)」 개정안을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1. 배경: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의 수입 식품 검사 정보 신고 지침 개정안은 식품 수출입 사업자 및 수입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영향을 미치며, 수입 식품 관련하여 제품 사양, 제품 성분, 첨부 서류 등이 일부 변경됨

2.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고 내용(주요 변경 사항을 발췌하여 제공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제품 사양	- 용기 또는 포장에 있는 제품의 경우: 단일 용기 또는 포장 내의 수량, 순 중량, 포장 규격 명시 필요, 벌크인 경우 'NIL' 이라고 기입(ex. (1) 식품 및 식품 첨가물 20kg/Bag, 50g/20CAS/CTN 등, (2) 식품 용기: 500ml/PCE 또는 용기 직경 및 깊이 등 (3) 식품 포장: 길이x너비(cm) 등) - 검사등록승인서류를 취득한 경우, 승인된 규격 정보 기재 * 순중량: 수입신고서의 순중량과 동일 해야 하며, 상품의 총중량에서 포장(내, 외포장 중량) 공제
제품 성분 (식품 첨가물 포함)	1. 식품, 원료 및 식품 첨가물 - 2가지 이상의 성분이 있을 경우, 함유량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대로 각각 기재 - 식품 첨가물의 경우, 「식품 첨가물의 사용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 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에 명시된 이름을 사용하고, 두 개 이상의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 각각 나열 2. 식품 포장 - 복합 포장 제품의 경우, 각 포장 내 제품의 성분, 첨가물 및 원산지를 별도로 신고 3. 검사등록승인서류를 취득한 경우, 승인된 성분 정보 기재 4. 단일 원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분 표시 필요

구분	내용
제품 카테고리	- 저산성 통조림 식품: 코드 1(열처리를 통한 살균 수준 제공 필요) - 산성화된 통조림 식품: 코드 2(최종 제품의 Ph 값 표기 필요) - 바로 먹을 수 있는, 캔이 아닌 식품(비통조림): 코드 3 -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가공된 원료 또는 최종 제품: 코드 4 -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를 줄이기 위해 추가 정제가 필요한 ISOTANK, FLEXTANK, FLEXBAG으로 운송되거나 선박에 직접 적재된 대량 식물성 오일: 코드 5 - 코드 1과 코드 4에 모두 속하는 제품: 코드 6 - 코드 2와 코드 4에 모두 속하는 제품: 코드 7 - 코드 3과 코드 4에 모두 속하는 제품: 코드 8 - 기타 제품: 코드 9
첨부 서류 목록	- 모든 수입 신고 시, 식품 사업자 등록 번호 필요 - 식품 첨가물 신고의 경우, 제품 등록 번호 기재 필요 - 전자 신고를 진행하면서 검사등록승인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확인 및 등록을 위한 문서 번호 기재 필요 - D2/F2로 분류된 수입 신고의 경우, 기존 수입신고 번호 및 품목 기재 필요 -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수입신고서, 제품 검사 서류, 운송 관련 문서 등을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서류의 일련 번호가 있는 경우 일련 번호 기재, 수출입 신고서의 경우 신고서 번호(송장번호) 기재 필요 - 다른 수출 건으로 동일한 서류를 업로드한 적이 있고 5년 이내에 전자 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동일 서류 업로드 필요 없이 기존 수출 건의 신청 번호 기재 필요
기타	- 제품 배치번호: 제품 배송 식별을 위한 배치 번호 또는 제품 추적에 사용할 수 있는 배치번호 또는 식별 가능한 정보 - 제조일자: 제품의 외부 포장에 제조일자 표기 필요, 연,월,일의 순으로 작성 - 유통기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유통기한이 있을 경우, 연,월,일의 순으로 작성 - 검사 신고 의무인의 주소지, 제조업체 코드, 제조업체 명칭, 연락처 기입 - 표기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

3.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출처

대만 식품약품관리서(TFDA), 修正「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資訊欄位申報須知」，並自中華民國一百十三年七月一日生效, 2024.06.26

Chemlinked, Taiwan Updates Directions for Declaration of Inspection Information of Imported Foods and Related Products, 2024.06.28

Laws & Regulations Database of Republic of China(Taiwan), 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2023.08.10(업데이트)